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22
----------	------

발의연월일 : 2016. 12. 30.

발의자 : 김삼화 · 장정숙 · 정인화
오세정 · 황주홍 · 유성엽
권은희 · 이정미 · 이동섭
권미혁 · 채이배 · 이상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함. 또한,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의 반영결과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시행에 있어 그 절차가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삭제 및 제11조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개선”을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으로, “개선 대책”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으로, “결과를”을 “반영계획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수립·시행”을 “수립·시행, 반영 결과 통보”로 한다.

이 경우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반영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수립·시행”을 “수립·시행·반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③ (생 략)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u>	<u><삭 제></u>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	
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
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	-----
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

-----.
②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
-----반영계획을-----
-----. 이 경우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반영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은 개선 권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수립·
시행, 반영결과 통보-----
-----.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1조제2항</u> 에 따른 개선 대책의 <u>수립·시행</u> 에 관한 사항	4. <u>제11조제2항 및 제3항</u> ----- ----- <u>수립·시행·반영</u> -----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